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012
----------	-------

발의연월일 : 2026. 4. 1.

발 의 자 : 이주희 · 안도걸 · 김 현  
문진석 · 조승래 · 송재봉  
이훈기 · 정진욱 · 박민규  
박정현 · 김선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는 청소년유해약물로  
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으며,  
담배를 판매·대여·배포하려는 자는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함.

그런데 자동판매기 등 무인 담배판매업의 경우 업자가 상대방의 나  
이 및 본인 확인을 위한 성인인증시스템을 설치하여도 청소년이 위·  
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이나 다른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구매  
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무인 담배판매업의 청소년 구매 차단  
조치가 전반적으로 허술한 문제점이 있음.

이에 담배의 판매·대여·배포에 이용되는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  
판매장치를 설치하는 영업장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함  
으로써 무인 방식으로 판매되는 담배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 차단을

강화하고 청소년을 담배 등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가목).

법률 제 호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가목에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2조제4호가목2)의 청소년유해약물의 판매·대여·배포에 이용되는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를 설치하는 영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p>나. (생략) 6. ~ 8. (생략)</p>	<p><u>소년유해약물의 판매·대 여·배포에 이용되는 자동 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 치를 설치하는 영업장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u> 나. (현행과 같음) 6. ~ 8. (현행과 같음)</p>
---------------------------------	--